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제4장(제18조~제23조) 삭제)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안 제13조제1항 개정, 제5장(제24조~제30조 신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함

나. 연수 관련 용어 재정립 및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2항·제8항 개정, 제3조제1항·제3항 개정, 제17조제1항 개정, 제2조제9항 신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수원의 종류’와 ‘설치기관’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대상’을 신규 임용 예정 교원까지 확대하며, 설치 인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연수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다. 연수기관 질 관리(안 제2조의3 제1항제6호, 제5항~제8항 개정 및 신설)

연수원이 연수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게 연수 개설·운영 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정지를 명한 연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연수원은”으로, “학교,”를 “학교의 장,”으로, “한다)과”를 “한다)의 교육감,”으로,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을 “기관의 장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 제3항에 따른 국립국제교육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원으로 보고, 같은 영 제16조, 제23조제3호, 제27조제1호, 제35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연수원: 제3조에 따른 연수 대상(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강의, 실습, 토의 등의 방법(이하 “집합연수”라 한다.)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연수기관
2.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생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형태로

연수(이하 “원격연수”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연수기관

3. 종합교육연수원: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연수기관

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인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명한”을 “명하거나 제5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정지”를 “운영정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로 한다.

6. 연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연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수원 인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신규채용 예정교원 등 제1항”으로 한다.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를 “제24조에 따른 교원역량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를 “반납하게”로 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교원역량개발지원

제24조(교원역량개발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하며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원역량진단 및 연수 등의 지원(이하 “교원역량개발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원역량진단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4조에 따라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는 경우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진단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진단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단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진단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진단 참여에 관한 교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제26조(진단방법)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하되 교육부장관이 추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호의2 서식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항목에 대한 동료 교원의 평가 결과
2.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에 관한 학생 인식조사 결과
3. 교사의 자기 역량 진단 결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며, 교육감은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진단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의 범위
2. 진단방법 및 방법별 절차
3. 진단시기
4. 그밖에 교원역량진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역량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진단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진단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역량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진단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역량진단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 ①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 및 학교별로 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격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각급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29조(국가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국가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이하 “국가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의 교육연구기관

② 국가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초·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개선·연구 및 정책 개발

2. 교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연수과정 개발 등 연구

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원 및 제3호에 따른 종합교육연수원의
인가 및 평가

4.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리

5. 국가지원센터와 영 제30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원센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는 국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시도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시도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원역량개발지원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교육청의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운영 지원
3. 지역 교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4.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개발 지원
5. 국가지원센터와 시도교원지원센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u>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u> 으로 한다.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 ----- --- <u>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u>
<신 설>	1. <u>교육연수원: 제3조에 따른 연수 대상(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강의, 실습, 토의 등의 방법(이하 “집합연수”라 한다.)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연수기관</u>
<신 설>	2. <u>원격교육연수원: 연수생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형태로 연수(이하 “원격연수”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연수기관</u>
<신 설>	3. <u>종합교육연수원: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연수기관</u>
② <u>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u>	② <u>연수원은</u> ----- ----- -----

에 따른 학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 ⑦ (생략)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 학교의 장, -----

한다)의 교육감, -----
기관의 장이나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 제3항에 따른 국립국제교육원은 제2조제1항에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신 설>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따른 연수원으로 보고, 같은 영 제16조, 제23조제3호, 제27조제1호, 제35조제3호-----
----.

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인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연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연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 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연수 대상)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
----- 명하거나 제5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하는 -----

-----.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수원 인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
----- 운영정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

제3조(연수 대상)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
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
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
람

② (생 략)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
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
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
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다. (생 략)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신규채용예정교원 등
제1항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

-----.

1. -----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
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
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
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
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
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4조에 따른
교원역량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연
수대상자의 선정기준·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①

---- 반납하게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삭제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
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
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
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
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
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
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
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
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
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
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
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
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삭제

제19조(평가의 원칙) <삭 제>

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
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
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
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
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
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능
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
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
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
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20조(평가항목) <삭 제>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
용) <삭 제>

다.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삭 제>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
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
각 정한다.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제23조(세부 평가방법) <삭 제>

필요한 중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교원역량개발지원

제24조(교원역량개발지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하며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원역량진단 및 연수 등의 지원(이하 “교원역량개발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원역량진단의 원칙) 교

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4조에 따라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는 경우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진단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진단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단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신 설>

을 확보할 것

3. 진단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진단 참여에 관한 교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제26조(진단방법)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하되 교육부장관이 추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호의2 서식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항목에 대한 동료 교원의 평가 결과

2.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에 관한 학생인식조사 결과

3. 교사의 자기 역량 진단 결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며, 교육감은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진단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의 범위

<신 설>

<신 설>

2. 진단방법 및 방법별 절차

3. 진단시기

4. 그 밖에 교원역량진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역량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진단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진단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역량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진단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역량진단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

①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은 교

<신 설>

원역량개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 및 학교별로 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격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각급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29조(국가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국가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이하 “국가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의 교육연구기관

② 국가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초·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개선

· 연구 및 정책 개발

2. 교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연수과정 개발 등 연구

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원 및 제3호에 따른 종합교육연수원의 인가 및 평가

4.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리

5. 국가지원센터와 영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시도지원센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는 국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시도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시도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교원역량개발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원역

량개발지원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교육청의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운영 지원

3. 지역 교원의 역량강화를 지
원하기 위한 연수과정 개발·
운영

4.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개
발 지원

5. 국가지원센터와 시도교원지
원센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의 원
활한 운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시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가 미흡한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를 지정하거
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
보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
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502